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배출허용총량제에 관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1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5
1.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5
1.1.1.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 5
1.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7
1.2.1.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제 7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10
2.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10
2.1.1. 설치(변경)허가 10
2.1.2. 설치(변경)신고 13
2.1.3. 배출시설 설치 제한 16
2.2.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16
2.2.1. 대기오염 방지시설 16
2.2.2. 공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19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21
3.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21
3.1.1. 가동개시 신고 및 시운전 21
3.1.2. 측정기기의 부착 22
3.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26
3.2.1. 금지행위 등 26
3.2.2. 환경기술인 임명 28
3.3. 배출부과금 31
3.3.1. 배출부과금 부과 31
3.3.2. 배출부과금 감면 등 33
3.3.3. 배출부과금 납부 35
3.3.4. 배출부과금 조정 37
3.4. 행정제재 38
3.4.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38
3.4.2. 과징금 40
4.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42
4.1. 사업장 설치허가 등 42
4.1.1. 사업장 설치허가 대상 42
4.1.2. 사업장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절차 44
4.2.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48
4.2.1. 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49
4.2.2. 배출허용총량 산정 51
4.2.3.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53
4.3.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54
4.3.1. 굴뚝자동측정기 54
4.3.2. 연료유량계 57
4.3.3.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58
4.3.4.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59
4.3.5.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61
4.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61
4.4.1.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61
4.4.2.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64
4.4.3. 배출허용총량 조정 66
4.5. 과징금 및 특례 67

4.5.1. 총량초과과징금 67
4.5.2.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특례 70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1.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1.1.1.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세부목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

>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세부목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 염화불화탄소 및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특정대기유해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세부목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분류

사업장 분류

▪ 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및 별표 10)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계수를 통한 방법)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 사용량 (실측을 통한 방법)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 = 24시간 또는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보며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배출허용기준

기본 배출허용기준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일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강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7항).

> ※ 시·도 또는 대도시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예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1.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1.2.1.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제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설치허가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이란 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①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사업장 설치허가

▪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배출허용총량제

배출허용총량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 배출허용총량제, 배출권거래제 등에 관한 정보는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https://www.stacknsk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2.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2.1.1. 설치(변경)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설치허가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제2조).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이 위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
  - √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 √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 사업장 내 기숙사, 식당,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LNG 보일러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
> - "산업용 보일러´란 산업현장(생산공정) 등에 설치·사용되는 보일러를 말하며, "업무용 보일러"란 사업장 또는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로 제품 생산 등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적인 생산 및 사무와 연계된 보일러를 말합니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위 경우는 업무용 보일러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
>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47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 사항을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함)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9항).

1.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2.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출서류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해당)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해당)
-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 설치자만 해당)

허가기준

▪ 배출시설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7항).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달리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허가 대상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1.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배출구별로 산정)의 100분의 50 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설
2.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 사항을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변경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9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제1호).

-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출서류

▪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해당)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해당)
-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 설치자만 해당)

허가 의제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의제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2.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관련 서류 제출

▪ 위에 따라 신고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4항 및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호).

▪ 위의 허가조건 또는 변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3호의2).

▪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8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및 별표 36 제2호가목1).

-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 사용중지명령
-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 폐쇄명령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9호).

▪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3호).

형사처벌

▪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1호).

▪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5호의2).

2.1.2. 설치(변경)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설치신고 대상

▪ 설치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출서류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해당)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해당)
-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 설치자만 해당)

신고 의제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 의제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변경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변경신고

관련 서류 제출

▪ 위에 따라 신고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4항 및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

설치허가의 변경신고

설치허가의 변경신고 대상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 사항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항).

변경 신고 사유	신고 기한
①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다만, 배출시설의 총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변경 전
②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변경 전
④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⑤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⑦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제출서류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다음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정도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 그 밖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설치신고의 변경신고

설치신고의 변경신고 대상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변경 신고 사유	신고 기한
①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다만, 배출시설의 총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변경 전
②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변경 전
④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⑤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⑦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제출서류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2호).
-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1호의2).

2.1.3. 배출시설 설치 제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8항).

배출시설 설치 제한사유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이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는 경우

2.2.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2.2.1. 대기오염 방지시설

방지시설의 설치

방지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16. 그 밖에 위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예비용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방지시설의 설치의무

▪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변경신고를 한 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본문).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 방지시설의 설치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부대설비의 교체·개선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 포함)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환경전문공사업자

▪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본문).

환경전문공사업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 외의 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1.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다만, 2회 이상 증설하거나 대체하여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한 부분이 최초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해야 함)

3.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가방지시설

▪ 사업자가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시공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 사업자가 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 포함)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방지시설 설치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4호).

형사처벌

▪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2호).

2.2.2. 공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동 방지시설 설치

공동 방지시설 설치

▪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해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기구 및 대표자

▪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2항).

제출서류

▪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2.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사용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공동 방지시설 설치내용 변경

공동 방지시설 설치내용 변경

▪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1.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3.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3.1.1. 가동개시 신고 및 시운전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함)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의미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제출서류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 가동개시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시운전

시운전

▪ 가동개시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시운전 시설에 대한 특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되더라도 개선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 조업정지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5호).

형사처벌

▪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1호).

3.1.2. 측정기기의 부착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의무

▪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본문·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1.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流量·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 포함]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함]

▪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를 얻거나 신청을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단서·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금지행위

▪ 사업자는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

1.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
2. 부식(腐蝕), 마모(磨耗),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함)
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적산전력계

부착대상

▪ 배출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에는 적산전력계를 설치해야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별표 2제1호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지시설에는 적산전력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별표 2 제1호 단서).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 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아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해야 하는 방지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

부착방법

▪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나 기구류의 경우 사용되는 전압이나 전력의 인출지점이 달라 모든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부착하기 곤란한 때에는 주요 부대시설(송풍기 및 펌프)에만 적산전력계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별표 2제2호가목).

▪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적산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되, 배출시설의 전력사용량이 방지시설의 전력사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부착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별표 2제2호나목).

운영·관리기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

▪ 적산전력계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 제1호나목).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1의3).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착 면제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의무가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2호).

-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함)
-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시설로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
- 액체연료만을 사용하는 연소시설로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 황산화물 측정기기에만 부착 면제)
-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인 경우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방지시설인 경우 해당 배출구(다만,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으로 적힌 방지시설만 해당)
-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부착시기 및 부착유예

▪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부착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3호가목).

▪ 4종이나 5종의 사업장을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3호나목).

▪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이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유예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제 3호다목).

- 기존 시설로서 사업장 종규모변경으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이 된 경우 종규모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함)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이 유예됩니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신규 시설은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유예됩니다. 이 경우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개월(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후 1년)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운영·관리기준

▪ 지방환경관서장,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함)에 맞도록 유지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제2호가목).

▪ 지방환경관서장,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 이하 같음)을 받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는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의 경우에는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제2호나목).

▪ 지방환경관서장,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제2호다목).

▪ 지방환경관서장,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 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교정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제2호라목).

자가측정

자가측정결과 기록 및 보존

▪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금지행위

▪ 사업자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2항).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 ※ 자가측정의 대상, 측정횟수, 항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제6항).

▪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이 폐쇄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0호).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3호).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4호).

▪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하거나,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2호·제13호).

형사처벌

▪ 측정기기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3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자
-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자
-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한 자

▪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내려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2호).

▪ 측정기기 운영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2호).

▪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4호의3).

3.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3.2.1. 금지행위 등

시설운영 시 금지행위

금지행위

▪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1종·2종·3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 1종·2종·3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본문).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1종·2종·3종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단서).

4종·5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 4종·5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위 1.부터 5.까지의 사항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본문).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는 방법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방법

▪ 다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자동전송으로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시설운영 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6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7호).

▪ 부식이나 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호).

▪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1호).

형사처벌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호).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3호).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제2호).

3.2.2. 환경기술인 임명

환경기술인 임명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임명 시기

▪ 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 가동개시 신고를 한 때

▹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4종·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 **<환경기술인의 공동임명>**
>
> ※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 이하 또는 4 이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전단).
>
> ※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후단).
>
>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80톤 미만일 것
>
>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미만일 것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10).

구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5종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	

※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1종 사업장과 2종 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공동 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등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 자가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함)에 따라 할 것(다만,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자가측정 시 시료채취 방법 및 측정 결과 등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할 것(다만,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 기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포함)
-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해야 함)

환경기술인의 관리

-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다음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환경기술인의 업무방해 금지 등

-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4항).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4호).
- 환경기술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5호).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2호).
-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2호).

형사처벌

-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3조).

3.3. 배출부과금

3.3.1. 배출부과금 부과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배출부과금이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배출부과금의 종류

- 배출부과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
  -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 초과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배출부과금의 부과 시 고려사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3항).

기본부과금 부과

부과대상

-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황산화물
  - 먼지
  - 질소산화물

부과기간

▪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6).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기본부과금 산정방법

▪ 기본부과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초과부과금 부과

부과대상

▪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황산화물
- 암모니아
- 황화수소
- 이황화탄소
- 먼지
- 불소화물
- 염화수소
- 질소산화물
- 시안화수소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6).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초과부과금 산정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 초과부과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그 외의 초과부과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 초과부과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가산금

가산금 징수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9항).

3.3.2. 배출부과금 감면 등

배출부과금 면제 대상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본문).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함

2. 공정에서 발생되는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附生)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3. 1. 및 2.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위의 1. 또는 2.의 연료와 1. 또는 2.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1. 또는 2.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함)이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갖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제1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절차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 사용 시 제출서류

▪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대상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항·제6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배출부과금 면제대상 연료 사용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연료구매계약서 사본(같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함)
-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 운영 시 제출서류

▪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6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 배출부과금 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 설치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최적방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대기환경보전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시·도지사만 해당함)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경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 본문·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경감금액 = 기본부과금 × 협약의 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별 감축률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내의 범위에서 배출부과금이 경감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 단서·제2호).

배출부과금 감면 절차

「대기환경보전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제출서류

▪ 「대기환경보전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6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 배출부과금 경감 대상 사업장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자발적 협약서 사본
-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부과기간 동안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서(대기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3.3. 배출부과금 납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

납부통지 시기

▪ 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초과부담금 및 기본부과금에 대해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납부통지서 및 납부기간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전단).

▪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후단).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사유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1항 본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해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3에 따른 산정·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함)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1항 단서).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 징수유예는 다음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구분	징수유예기간	분할납부 횟수
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함)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위의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18회 이내로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징수유예에 따른 담보 제공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3항).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징수유예의 취소

징수유예의 취소사유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4항).

- 징수유예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3.4. 배출부과금 조정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조정신청 사유

▪ 배출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1.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했거나 이행하지 않아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했거나 시·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조정신청 절차

▪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조정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배출부과금 조정

초과부과금 조정

▪ 조정신청 사유 1.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날이나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 조정신청 사유 2.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기본부과금 조정

▪ 조정신청 사유 3.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자가측정기록부 및 관계공무원의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배출부과금 조정부과 및 환급

조정부과 및 환급 기한

▪ 조정신청 사유 1.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서면공지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조정으로 인한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3.4. 행정제재

3.4.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사업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함)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개선계획서 제출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함)을 받거나 위의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함)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 개선기간·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 √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또는 설계도
  - √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 √ 공사기간 및 공사비
  - √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
  -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 √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위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 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30분 평균치로 합니다.
-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위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조업정지명령

조업정지명령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조업시간 제한 등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기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해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3.4.2. 과징금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대상 시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과징금 부과 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를 명해야 하는 경우 그 조업정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또는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2항).

-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 과징금 부과 대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

1.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 포함)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개선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업정지처분(「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대상이 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1호 및 제38조제4항).

> 과징금 = 조업정지 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
>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부과계수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0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1.5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1.0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0.7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0.4

과징금 체납

▪ 과징금을 내야 할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4항).

4.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4.1. 사업장 설치허가 등

4.1.1. 사업장 설치허가 대상

허가대상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 4. 3.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3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대기관리권역

▪ “대기관리권역”이란 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②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①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 대기관리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함)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 4톤
-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 4톤
- 연간 먼지 배출량 : 0.2톤

> ※ 연간 배출량은 1종·2종·3종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합니다.

※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위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먼지 배출량은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폐수·폐기물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배출시설 중에서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의 배출량은 위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1.2. 사업장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절차

사업장 설치허가

허가신청

▪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신설) ②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증설)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3.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량의 산출방법을 포함하여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4.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5.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
6. 방지시설의 종류·외형적 크기·처리용량·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업체명 표기)
7.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
8.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다만, 신청 대상 사업장이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연간 20톤 이상 발생시키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5.부터 12.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배출량 기준을 초과(배출량 증가)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3.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4.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5.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

6. 방지시설의 종류·외형적 크기·처리용량·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업체명 표기)

7.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

8.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기존사업장 신고

▪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6항 전단).

▪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3개월 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6항 후단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 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7항).

▪ 기존사업장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본문).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3.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4.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5.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
6. 방지시설의 종류·외형적 크기·처리용량·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업체명 표기)
7.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
8.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 다만, 신고 대상 사업장이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5.부터 8.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단서).

사업장 변경허가 및 신고 등

변경허가

▪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본문).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사업장 설치허가 시 제출한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3.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 다만, 신청 대상 사업장이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

변경신고

▪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사항 중 ①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②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③ 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④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허가가 아닌 사업장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

▪ 이 경우 사업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제1항제2호·제3호).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신고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사업장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 경우 포함)를 한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8항).

허가의 제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본문).
-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단서).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조건인 최적방지시설 설치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장 변경신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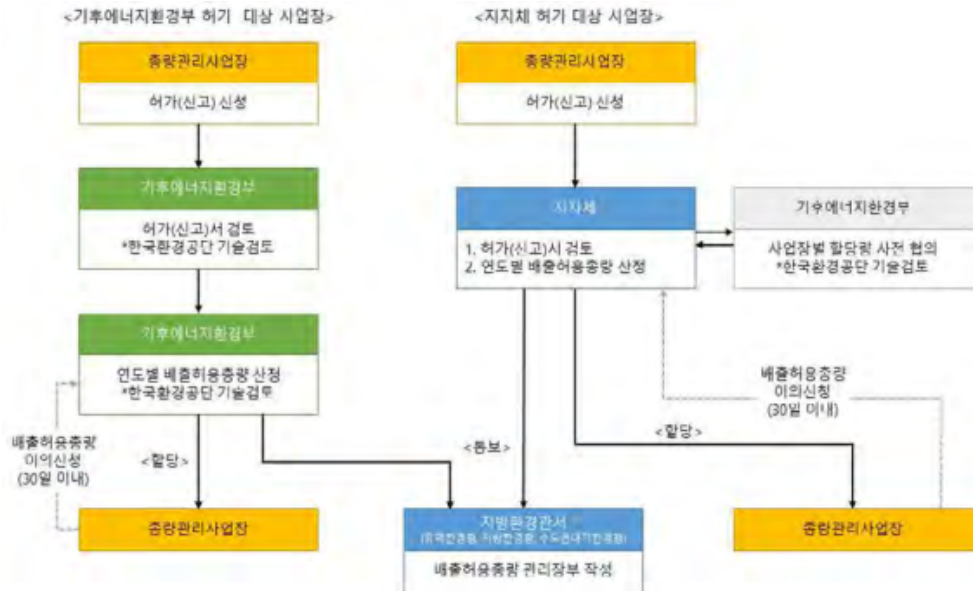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기존사업장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4.2.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4.2.1. 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배출허용총량 할당절차>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56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할당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할당 시 고려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1. 기본계획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2. 지역배출허용총량
3.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5.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6.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할당권한 위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권한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업장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

시·도지사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협의

▪ 시·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 시·도지사가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1.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2. 해당 시·도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해당 사업장의 협의 대상인 할당량을 포함함)
3. 사업장별 할당량의 산정 근거가 되는 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및 배출허용총량, ② 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4. 사업장별 향후 5년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계획
5.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계획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함)이 증가된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된 범위에서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 해당 시·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각각 추가 할당
-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 증가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2항).

-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함)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 배출량을 산정하던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게 된 경우로서 재산정 결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이 속하는 시·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 등을 고려하여 예비분의 잔여량의 범위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배출허용총량의 취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1항).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
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5.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위 2. 및 3.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2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3항).

예비분 이전

▪ 위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예비분으로 이전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4항).

4.2.2. 배출허용총량 산정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 할당계수 단위량
>
>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가 있는 배출시설

초기 할당계수(초기 연도의 할당량 산정 시 적용) =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초기 연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 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최종 할당계수(최종 연도의 할당량 산정 시 적용) =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최종 연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 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중간 연도 할당계수는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에 선형비례 방법을 적용하여 연도별로 산정합니다.

· 그 외의 배출시설: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초기 할당계수 = 최종 할당계수

※ **할당계수 단위량**

· 할당계수 단위량 = 총량관리사업자의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의 평균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위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산정의 특례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산정의 특례

▪ 최근 5년간 법정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은 최근 연도의 동종 업종 가동률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가목).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려는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속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할당(추가 할당을 포함함)된 각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합산량은 해당 연도의 시·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함)의 총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배출량 산정방법이 변경된 경우, 해당 배출구의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다목).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 인정

외부 감축활동 인정 신청

▪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함)는 사업장 외부(사업장이 속한 대기관리권역 내로 한정)에서 외부 감축활동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3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항).

※ "외부 감축활동"이란 연료전환(종전 연료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연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등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는 활동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에 대한 감축량의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제3항).

> ※ 외부감축량 = 외부 감축활동 시행 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 외부 감축활동 시행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3제2항 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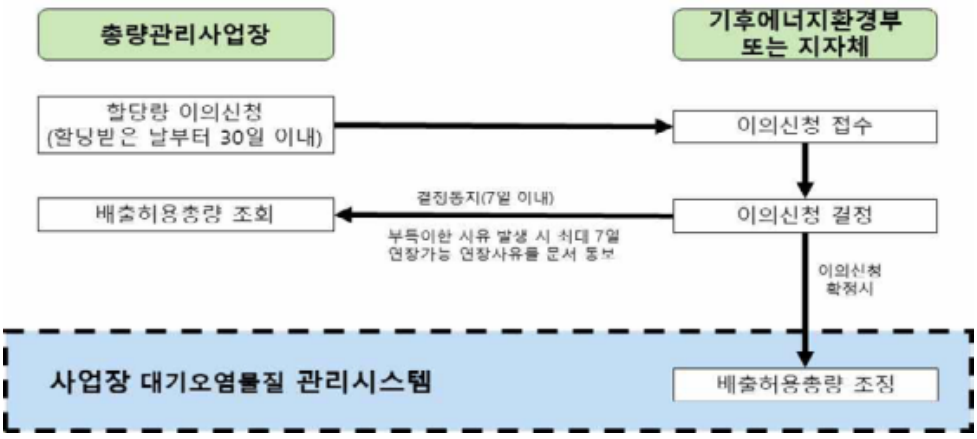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산정한 외부감축량만큼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의 배출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3제3항).

4.2.3.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개요

이의신청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94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이의신청 절차

문서에 의한 이의신청

▪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날
- 제출한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
- 할당 취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할당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

▪ 이의신청을 하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이의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도지사(통합관리사업장,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8호).

이의신청 결과 고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 포함)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4.3.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4.3.1. 굴뚝자동측정기

부착대상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의무

▪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 본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의무 면제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는 부착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 단서).

1.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2.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3.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보일러의 배출구(황산화물·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함)

4.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5.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전년도 배출량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

√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질소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연간 먼지 배출량이 0.15톤 이하(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6. 석유화학, 정유, 철강 업종 등에서 화재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가연성 가스를 연소시키는 배출시설[플레어스택(flare stack) 등을 말함]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측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배출구

부착 및 관리기준

부착 및 교체

▪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

▪ 총량관리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온도측정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비고 제3호 본문에 따른 온도측정기 중 최종 연소실 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로서 한국산업표준(KS)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정과 기록 보존의무가 면제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

관리

▪ 총량관리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

▪ 총량관리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

부착시기

부착시기

▪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하여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체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착 시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3호나목).

1.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등 추가적인 작업안전 확보가 필요하여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설의 개선 및 보강이 필요하여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수급 문제로 인하여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4.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시의 작업 안전을 위하여 일련의 연속공정을 가동 중지해야 하는 배출시설 중 1년 이상 상시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배출량 산정

측정자료의 산정기준

▪ 30분 배출량은 그램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4호가목).

▪ 월 배출량은 30분 배출량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4호가목).

배출량 산정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4호가목).

오염물질	배출량(g) 산정방법
질소산화물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m^3)×10^3×46÷22.4
황산화물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m^3)×10^3×64÷22.4
먼지	30분 평균농도(㎎/Sm^3)×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m^3)×10^3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호 및 제2호).

-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출량 산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배출량 산정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4.3.2. 연료유량계

부착대상시설

연료유량계 부착의무

▪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보일러의 배출구(황산화물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함)
-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전년도 배출량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
  - √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질소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 연간 먼지 배출량이 0.15톤 이하(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 석유화학, 정유, 철강 업종 등에서 화재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가연성 가스를 연소시키는 배출시설[플레어스택(flare stack) 등을 말함]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측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배출구

연료유량계 부착의무 면제

▪ 연료유량계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연료유량계 부착의무가 면제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

▪ 부착 제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제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비고 제4호).

부착 및 관리기준

부착 및 교체

▪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고,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나목).

관리

▪ 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나목).

부착시기

부착시기

▪ 연료유량계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하여 새로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

배출량 산정

배출량 산정방법

▪ 연료유량계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4호나목).

> 배출량 = 월당 연료사용량 ×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 (1−방지시설 효율/100)

> ※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연료유량계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출량 산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연료유량계를 조작하거나 배출량 산정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4.3.3.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량 산정방법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2조제1호).

> 배출량 = 배출계수 ×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 (1 – 방지시설 효율/100)

▪ 위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합니다(「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2조제2호).

▪ 위의 산정방법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2조제3호).

배출량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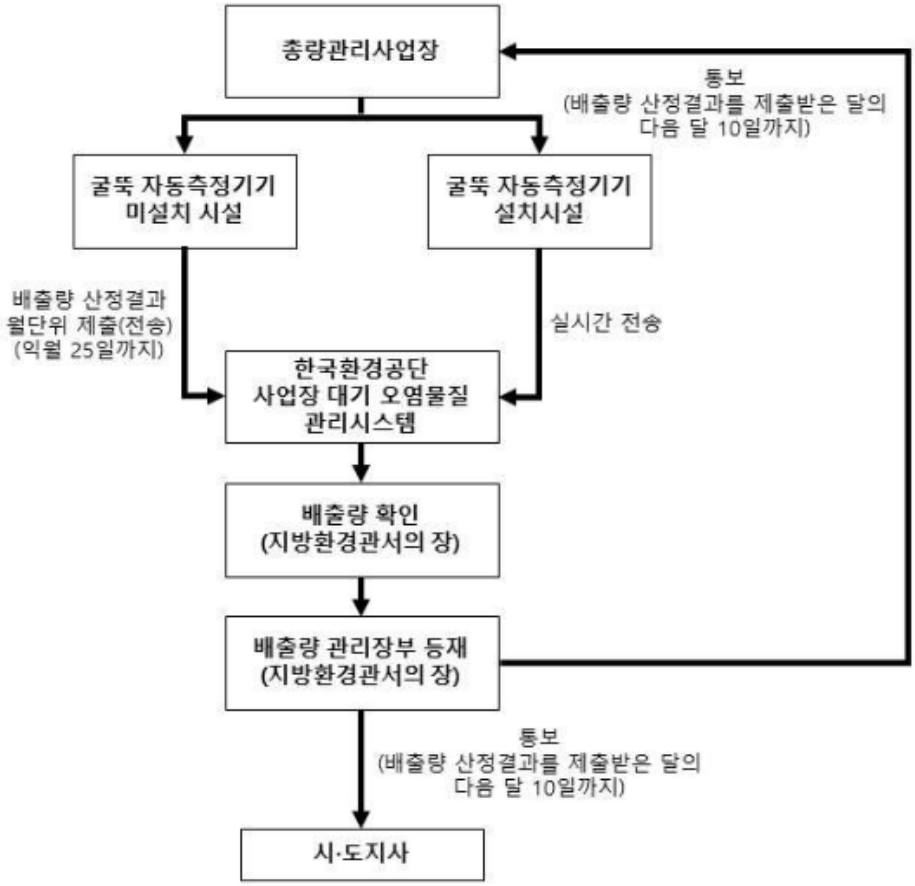
▪ 위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4.3.4.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절차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16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배출량 산정 결과 제출

배출량 산정 결과 제출

▪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결과(산정 근거자료를 포함)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전산망을 통한 제출

▪ 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배출량 산정결과를 전송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단서).

배출량 산정 결과 확인

산정 결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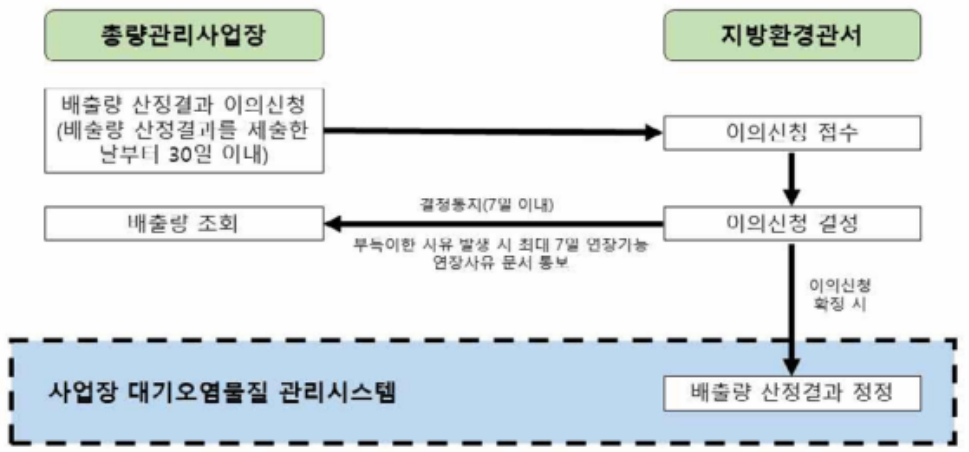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받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용을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4.3.5.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개요

이의신청 절차도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94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이의신청 절차

문서에 의한 이의신청

▪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이의신청 결과 고지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 포함)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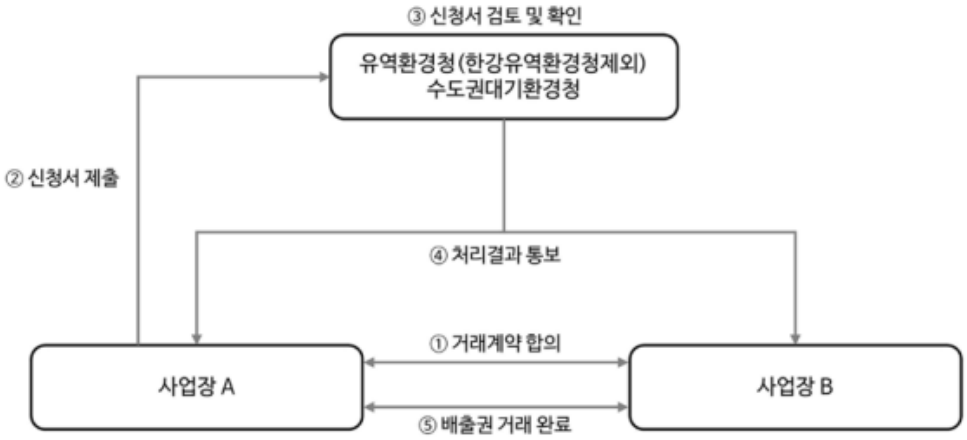
4.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4.4.1.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배출허용총량 이전 개요

이전 절차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52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배출허용총량 이전의 요건

▪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2.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배출허용총량 이전의 효과

▪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이전 가능 지역, 시기 및 범위

배출허용총량 이전 가능 지역

▪ 배출허용총량은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에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 총량관리사업장이 동일 지역 내에서 이전 시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변경 여부
>
> - 총량관리사업장의 이전 변경 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량관리사업장이 동일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은 변경 없이 동일합니다.
>
>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01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배출허용총량 이전 시기

▪ 총량관리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할당받은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산정하되, 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배출시설로서 할당계수 단위량을 재산정하기 이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은 제외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 이월량 + 구매량 – 판매량

이전 절차

신청서 등 제출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이전을 포함)을 확인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와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이전 개시 3일 전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 이하 같음)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신청서 검토 및 확인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충족하는 경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확인하며,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1.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
2. 지역배출허용총량 중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 여부
3.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지역 범위 준수 여부
4. 신청서 내용 및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적정 여부 등

검토 결과의 통보 및 등재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확인 및 반려 결과를 이전을 신청한 총량관리사업자,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통보하고, 배출허용총량 변동 내용을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 포함)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 ※ 전자거래시스템의 운영
>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대한 계약 및 신청 기능
2.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신청에 대한 접수 및 확인 기능
3. 배출허용총량의 수급 현황 등 시장정보 제공
4.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이전 제한

이전 제한 및 해제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 제4항).

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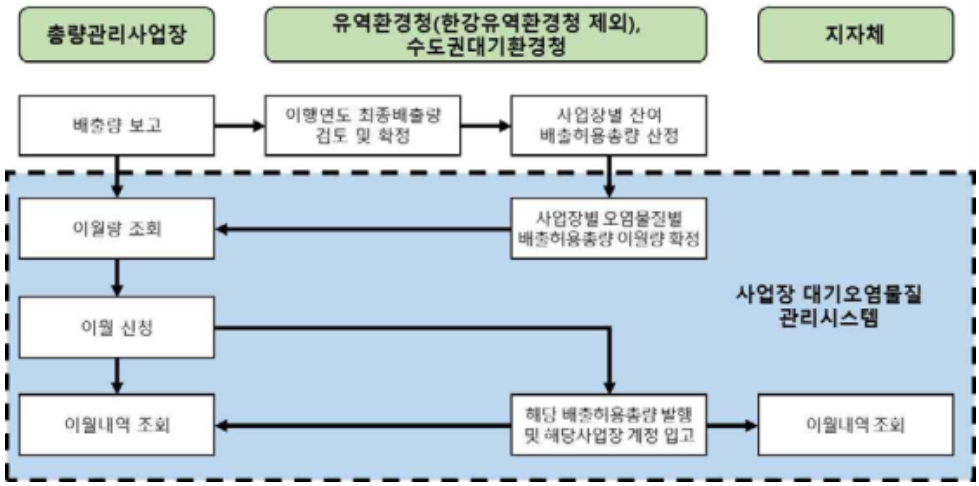
※ 연간배출량, 배출권 거래량, 배출권 가격동향 등에 관한 정보는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https://www.stacknsk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2.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배출허용총량 이월

이월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이월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65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 포함. 이하 같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이하 "이월가능 배출허용총량"이라 함)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4 본문).

▪ 다만,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이월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단서).

> 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 × 0.1 × (이월가능 배출허용총량 ÷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이월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

차입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에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습니다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제2항).

▪ 이 경우 차입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양으로서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10% 이내로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의 절차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

▪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월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이월을 받는 연도를 말함)의 4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2.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

▪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월하려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

▪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차입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차입을 받으려는 연도를 말함)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제2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및 별지 제5호의3서식).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2.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

▪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입하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4항).

4.4.3. 배출허용총량 조정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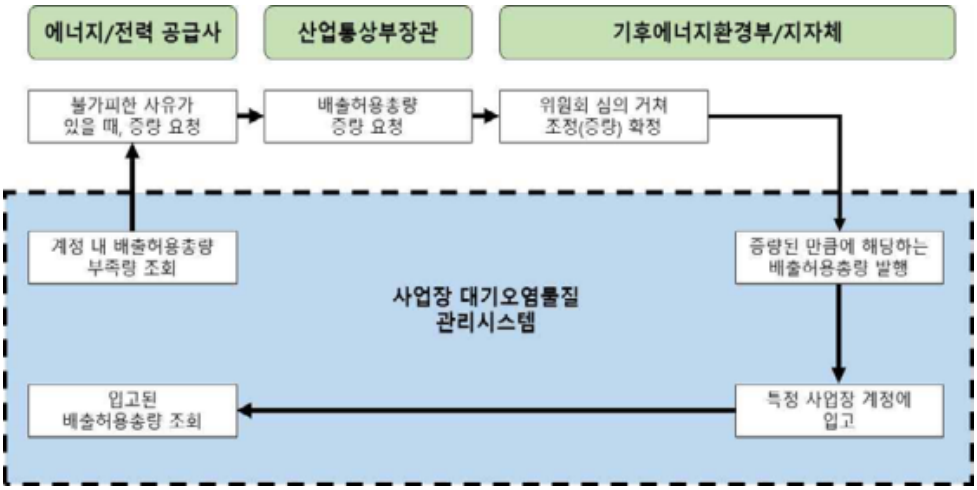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증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1. 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3.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개발이 필요한 경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54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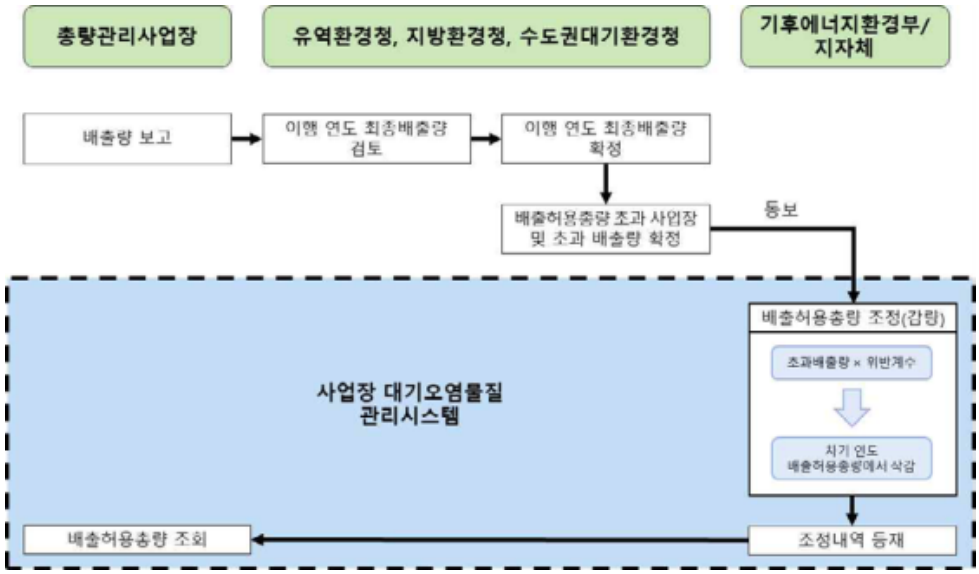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의 범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다음의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줄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5).

위반횟수	1회	2회	3회	4회
위반계수	0.0	1.0	1.2	1.5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감량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55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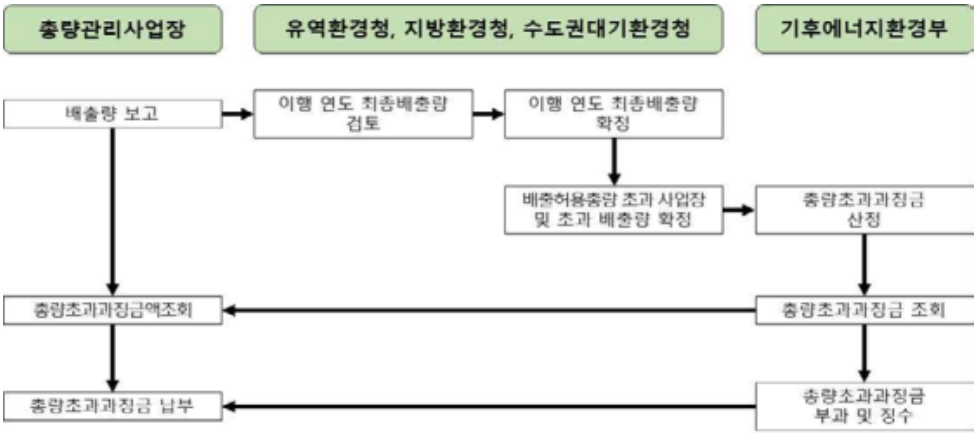
4.5. 과징금 및 특례

4.5.1. 총량초과과징금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개요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절차도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89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총량초과과징금 산정 및 부과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방법

▪ 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 총량초과과징금 =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 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에 따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부과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

총량초과과징금과 초과부과금의 비교

구분	총량초과과징금	초과부과금
기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부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지도점검 결과 배출량 기준)
부과시기	부과 사유 발생 시(연 단위)	초과부과금 납부통지사유 발생시
계산식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오염물질 kg당 부과금액×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오염물질 kg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부과대상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를 받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전 사업장
항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외 6종
관련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총량초과과징금)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88p,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6. 6.>

총량초과과징금 납부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초과과징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하여 납부통지를 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총량초과과징금 납부

▪ 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후단).

가산금

가산금 징수

▪ 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총량관리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체납 시 징수

▪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7항).

4.5.2.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특례

배출부과금 등 특례

배출부과금 감면

▪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1.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2.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3.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황함유기준 적용 배제

▪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위의 기본부과금 면제 및 황함유기준 적용 배제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자발적 협약체결의 혜택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면 다음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1.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지원
2.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자발적 협약의 내용

▪ 총량관리사업자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과 체결하는 자발적 협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1.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

3.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자발적 협약 내용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협약 이행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협약상 이행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 전체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이행결과의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1. 해당 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2.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3.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4.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 현지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